

호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28.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아버지의 칠순 모임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ㄴ.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며 변호사가 형사고발을 당했다더라도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사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품위손상 여부의 판단은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ㄷ, ㄹ

29.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 ③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30.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법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 ② 부산지방법검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법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③ 광주지방법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대구지방법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법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2. 변호사의 직무 및 법조인접직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그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③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률사무이므로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33.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판사와 중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②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 손해는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다.
- ③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④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4.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법무법인은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정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③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④ 법무법인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정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35.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36.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당해 중재 사건과 무관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증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③ 회사회생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로서 재직 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하였던 변호사는 그 계약에 관련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부터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37. 변호사의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 ③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 ④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종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가해자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이는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이혼을 생각 중인 A와 이혼 사건을 상담하였는데 A는 甲에게 소송비용과 이혼이 가능한 사유만을 물어보고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이후 A의 남편인 B가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와의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다. 甲은 B의 이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C와 D는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C는 D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피해자를 상해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라고 주장하고 있다. C와 D 모두 동의하면 변호사 乙은 C와 D 모두로부터 위 상해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丙은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가 동의하면 丙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丁은 의뢰인 F로부터 G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丁에게 의뢰하였을 때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9.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甲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A와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乙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공동피고인 A와 B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위 강도상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乙이 A의 동의 없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A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 ③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乙이 검사로 재직 당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다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40.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甲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甲이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이 형사사건에서 직접 변론에 관여한 바는 없다.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한 乙은 그 후 제기된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B의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법무법인 L은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하였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무법인 L이 D로부터 위 사무를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
- ④ 변호사 丙은 E와 F 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E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겠다고 丙에게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丙이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만 하는 경우라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① | ② | ① | ① | ④ | ④ | ② | ③ | ④ | ③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④ | ④ | ③ | ② | ② | ① | ④ | ② | ② | ②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③ | ④ | ③ | ③ | ③ | ② | ① | ① | ③ | ③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④ | ② | ① | ③ | ④ | ① | ④ | ② | ③ | ③ |